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과업내용 변경을 포함〉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846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 과업내용 변경을 포함(안 제19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주회의원 등 26인

나. 발 의 일 : 2026. 2. 12.

다. 회 부 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Ⅲ. 검토의견

1.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과업내용 변경을 포함 (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u>설계변경</u>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u>설계변경(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 포함)</u>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함 (안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공사계약을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용역계약 등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²⁾,

1)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을 직접 작성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만으로는 용역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기획, 설계, 개발, 시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고도화되고, 이에 따라 계약 후 규격변경이나 과업내용의 변경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물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물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⑥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용역계약에서의 설계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현재도 계약예규 등에서 이미 용역계약에서의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며, 과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⁴⁾. 특히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지시·제안 시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도록 하고, 계약금액 조정 시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도 마련하고 있음⁵⁾.

3) 이주희의원실, 공공SW사업 과업 변경 합리화와 계약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2026.2.6.)

4)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⁶⁾,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과업변경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활용되고 있음.

재정경제부는 현재도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
- 5)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 6)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설계변경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국가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려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10528호,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u>설계변경</u>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 ----- ----- --- <u>설계변경(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한다)</u>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160